##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추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844 발의연월일: 2025. 1. 24.

발 의 자:추미애・신정훈・이성윤

박은정 • 김준혁 • 최민희

오세희 · 강선우 · 이재강

윤종군 • 정일영 • 안규백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및 시행령, 「군인 징계령」은 장교, 준사관 및 부사관을 보직에서 해임할 때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,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. 또한 군인에 대한 징계위원회구성 시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·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,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 중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2017년 공관병 갑질 사건, 12·3 비상계엄사령관 박안수 육 군참모총장의 경우와 같이 고위급 장성이 비위를 저지른 경우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가 부족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, 징계위원회,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어 보직해임 및 징계 심의를 하지 못 하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부족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, 징계위원회,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보직해임 및 징계에 대한 입법 미비를 해소하고 비위 행위자가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처벌과 불이익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(안 제17조의2제3항·제4항·제5항 신설 등).

##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,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5항) 중 "보직해임심의위원회"를 "제2항부터 제6항 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"로 한다.

- ③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법무장교가 보직되어있는 기관 또는 부대에서는 위원 중 1명을 법무장교로 한다. 다만, 법무장교를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아니더라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.
- ④ 국방부장관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이거나 선임자인 장교의 수가 3명에 미달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이거나 선임자인 장교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교인 위원 중 최상위

서열자로 하고, 위원 중에 장교가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

- 1. 판사·검사·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
- 2. 군사안보 관련 분야, 정치·행정·법률·심리학·인권 관련 분야 등의 교수·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
- ⑤ 제4항에 따른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지명 시 국방부장관이 사고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면 국방부차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.

제58조의2에 제3항,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국방부장관은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3명에 미달하여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교인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하고, 위원 중에 장교가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
- 1. 판사・검사・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
- 2. 군사안보 관련 분야, 정치·행정·법률·심리학·인권 관련 분야 등의 교수·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
-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지명 시 국방부장관이 사고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면 국방부차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.

⑤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0조의2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,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국방부장관은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장교인 위원 중최상위 서열자로 하고, 위원 중에 장교가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
- 1. 판사・검사・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
- 2. 군사안보 관련 분야, 정치·행정·법률·심리학·인권 관련 분야 등의 교수·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
- ④ 제3항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지명 시 국방부장 관이 사고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면 국방부차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.
- ⑥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7조의2(보직해임) ①・② (생	제17조의2(보직해임) ①・② (현		
략)	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③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보직		
	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		
	또는 선임자 중에서 위원장 1		
	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		
	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법무		
	장교가 보직되어있는 기관 또		
	는 부대에서는 위원 중 1명을		
	법무장교로 한다. 다만, 법무장		
	교를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		
	에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		
	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아니		
	더라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		
	<u>다.</u>		
<u>&lt;신 설&gt;</u>	④ 국방부장관은 보직해임 심		
	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이거나		
	선임자인 장교의 수가 3명에		
	미달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		
	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		
	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		
	급자이거나 선임자인 장교를		
	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다음 각		

<신 설>

③ • ④ (생 략)

⑤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⑧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
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 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 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직해 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교 인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하고, 위원 중에 장교가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지명하 는 사람으로 한다.

- 1. 판사·검사·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한 사람
- 2. 군사안보 관련 분야, 정치 행정ㆍ법률ㆍ심리학ㆍ인권 관 련 분야 등의 교수·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
- ⑤ 제4항에 따른 보직해임심의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지명 시 국방부장관이 사고로 권한 을 행사할 수 없으면 국방부차 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.
- ⑥·⑦ (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)
- ·운영·심의 등에 필요한 사 정된 사항 외에 보직해임심의

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8조의2(징계위원회)  $(1) \cdot (2)$  제58조의2(징계위원회)  $(1) \cdot (2)$ (생 략) <신 설>

위원회-----

(현행과 같음)

- ③ 국방부장관은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의 수가 3명에 미달하여 제1항 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계처분등 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 교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 로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 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징계위 원회의 위원장은 장교인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하고, 위원 중에 장교가 없는 경우에는 국 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
- 1. 판사·검사·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한 사람
- 2. 군사안보 관련 분야, 정치・ 행정ㆍ법률ㆍ심리학ㆍ인권 관

<신 설>

<신 설>

제60조의2(항고심사위원회) ① · ② (생 략) <신 설> 면 분야 등의 교수·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

-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지명 시 국방 부장관이 사고로 권한을 행사 할 수 없으면 국방부차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.
- ⑤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민간 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0조의2(항고심사위원회) ①・
  - ② (현행과 같음)
  - ③ 국방부장관은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5명에 미 달하는 경우에는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 간위원으로 위촉하여 항고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장교인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하고, 위원 중 에 장교가 없는 경우에는 국방 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

]	<u>l. 판사·</u>	검사 •	군법	<u> 무관</u>	<u>또는</u>
	변호사의	기 직에	5년	이상	재직
	한 사람				

- 2. 군사안보 관련 분야, 정치· 행정·법률·심리학·인권 관 런 분야 등의 교수·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
- ④ 제3항에 따른 항고심사위원 회 구성 및 위원장 지명 시 국 방부장관이 사고로 권한을 행 사할 수 없으면 국방부차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.
- ⑤ (현행 제3항과 같음)
- ⑥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민간

   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

 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③ (생 략) <신 설>